

독일의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독일

이승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

■ 머리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는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며 전 세계적인 대유행 추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혼란이 더욱 가중된 측면도 있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전염병의 최상위 단계인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이 이루어진 후 약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유럽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¹⁾

코로나19에 대한 독일의 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Soziale Distanz)’ 차원에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모임과 접촉 등이 제한되는 수준을 넘어 감염의 우려가 높은 영업시설 및 생산시설의 운영까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5월 초인 현재 독일에서는 연방 차원의 영업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였고, 각 주의 상황에 따라 주 정부의 통제하에 각종 사회적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바이러스의

1)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유럽 질병예방관리본부(ECDC) 참조 (<https://www.ecdc.europa.eu/en/cases-2019-ncov-eueea>).

<표 1> 유럽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2020.5.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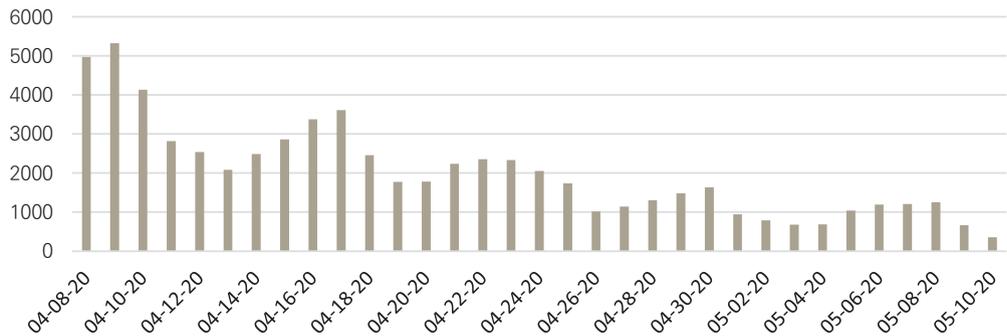
(단위: 명)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스페인	224,390	26,621
영국	219,183	31,855
이탈리아	219,070	30,560
독일	169,579	7,417
프랑스	139,063	26,380
벨기에	53,081	8,656
네덜란드	42,627	5,440
포르투갈	27,581	1,135
스웨덴	26,322	3,225
아일랜드	22,996	1,458

자료 : ECDC, 2020(최종 검색일: 2020.5.11).

[그림 1] 독일 코로나19, 일간 신규 확진자 수(2020.5.11 기준)

(단위: 명)



자료 : ECDC, 2020(최종 검색일: 2020.5.11).

확산 초기와 비교할 때 사회적 분위기는 혼란과 공포 상황에서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아직 1일 천 명 수준의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그림 1 참조), 코로나19의 감염 위험과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²⁾

2) 독일의 코로나19 감염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RKI) 참조(<https://>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독일 정부의 기본적 제한 조치들과 사회보장적 지원 정책, 고용 보호를 위한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4월호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4월호에서 깊이 다루지 못하였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 대한 독일 정부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 제한 조치 관련 현황

연방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행정 작용의 주체가 되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협력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하에 지난 3월 12일 마련되었던 ‘사회적 접촉의 제한에 관한 지침(Leitlinien zur Beschränkung sozialer Kontakte)’은 4월 15일 메르켈 총리와 각 주 정부 수상들이 진행한 회의를 통해 5월 3일까지 적용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³⁾ 이러한 연장 결정에는 그동안의 제한 조치들이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⁴⁾

4월 15일 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

이 회의의 결의 사항을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의 1.5미터 거리 유지 및 사회적 접촉 제한 등과 같은 그동안의 제한 조치를 유지, 연장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되, 한편으로는 이 결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각 주의 상황에 따라 각 주 정부의 책임하에 일정 부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일단 생산 및 영업 관련 시설에 대한 강화된 제한 조치 추가는 없었으며, 영업을 제한되었

experience.arcgis.com/experience/478220a4c454480e823b17327b2bf1d4/page/page_1/.

3) 4월 15일 진행된 연방 총리와 각 주 수상들의 원격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5226/1744452/b94f2c67926030f9015985da586caed3/2020-04-16-bf-bk-laender-data.pdf?download=1> 참조.

4) Bundesregierung Beschluss(연방 정부 결정), Telefonschaltkonferenz der Bundeskanzlerin mit den Regierungschefinnen und Regierungschefs der Länder am 15. April 2020, 2020.04.15, S. 1

던 상점의 경우 매장 크기 800평방미터(sqm)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소규모 매장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였다.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테스트, 확진자 관리 등을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의료 지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의료 지원팀을 주민 2만 명당 최소 1개 팀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별 관리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주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팀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독일 국민들의 일반적 법 감정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확진자의 동선 추적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군 인력을 투입하여 확진자 추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월 6일 회의의 주요 결정 사항

위 4월 15일 결의에 기초한 정책 시행 이후 코로나19와 관련한 독일 정부의 기본적인 상황 인식은, 완화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가장 최근인 5월 6일 진행된 연방 총리와 각 주 수상들의 원격회의를 통해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졌으며,⁶⁾ 전반적인 기초는 4월 15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사회적 접촉의 제한에 관한 지침(Leitlinien zur Beschränkung sozialer Kontakte)’을 통해 마련된 기본적인 제한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 효력의 연장에 동의한 가운데, 5월 6일의 결의 사항에서 제한의 완화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동안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4월에 비하면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접촉 제한 차원에서 가족 구성원 외의 모임을 제한하였던 것에서, 가족 간(두

5) Bundesregierung Beschluss(연방 정부 결정), Telefonschaltkonferenz der Bundeskanzlerin mit den Regierungschefinnen und Regierungschefs der Länder am 6. Mai 2020, 2020.05.06, S. 1

6) 5월 6일 진행된 연방 총리와 각 주 수상들의 원격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3812/1750978/fc61b6eb1fc1d398d66cfea79b565129/2020-05-06-beschluss-mpk-data.pdf?download=1> 참조.

가족)의 모임은 허용하도록 하였다.

상점의 영업 제한 조치는 4월 매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차적인 해제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영업 제한이 없는 업종인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전면적인 영업 재개를 허용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도 허용하였고,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재개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요식업과 숙박업의 경우에도 각 주 정부에서 영업 재개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극장, 오페라 및 콘서트 홀과 같은 문화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도 주 정부에 결정 권한을 이양하였다.

만약 제한 조치의 해제 후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시, 10만 명당 50명 이상의 집단적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 주 또는 지역 단위에서 긴급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권한을 일단 주 정부에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자(Solo-Selbständige) 및 소기업(kleine Unternehmen)에 대한 긴급 지원금(Soforthilfe)

독일 연방 정부는 2020년 3월 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소규모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안정성과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서 긴급 지원금(Soforthilfe)의 지급을 결정하였다.⁷⁾

독일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거나 주된 사무소가 독일 내에 위치하여 독일의 세무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1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비롯하여 소규모 기업이 이 긴급 지원금의 대상이다.⁸⁾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 중 500억 유

7) Bundesregierung(연방 정부)(2020.3.27), “Wir lassen niemanden allei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soforthilfen-beschlossen-1733604>

8) Bundesregierung(연방 정부)(2020.3.30), Soforthilfen stehen bereit, <https://www.bundesregierung.de>

료가 이 긴급 지원금에 배정되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소규모 기업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상시 고용 전일제 피고용인의 수에 따라,

- ①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최대 9,000유로,
- ② 1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최대 15,000유로

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용인 수를 산정하는 기준 일자 는 2020년 3월 23일로 결정되었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직업 훈련생(Auszubildende)의 경우에는 피고용인 수를 산정함에 있어 신청인이 산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⁹⁾ 예를 들어 전일제 근로자가 5명인 사업장에 1명의 직업 훈련생이 있는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자격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이러한 피고용인 수 외에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업종, 산업 분야에 관계 없이 지원금의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및 서비스 업종은 물론이고 농업 분야의 생산 농가도 이러한 요건만 충족하면 긴급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⁰⁾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¹¹⁾

de/breg-de/aktuelles/corona-soforthilfen-1737444 (최종 검색일: 2020.5.10)

9) BMWi(연방경제에너지부)(2020.4.20), "Coronavirus: Antworten auf häufig gestellte Fragen", <https://www.bmw.de/Redaktion/DE/FAQ/Coronavirus/faq-coronavirus.html> (최종 검색일: 2020.5.10)

10) Bundesregierung(연방 정부)(2020.3.30), Soforthilfen stehen berei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corona-soforthilfen-1737444> (최종 검색일: 2020.5.10)

11) BMWi(연방경제에너지부)(2020.4.20), "Coronavirus: Antworten auf häufig gestellte Fragen", <https://www.bmw.de/Redaktion/DE/FAQ/Coronavirus/faq-coronavirus.html> (최종 검색일: 2020.5.10)

긴급 지원금은 사업(영업) 운영상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예를 들어 임대료, 대출 등 금융 비용, 사업용 장비, 차량 등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 등에 대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또는 자영업자 자신(사업주)의 급여 등은 이 지원금의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개인적인 생활비, 예를 들어 신청자의 자택 임대료(주거비),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등도 포함되지 않는다.¹²⁾

지원요건

긴급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코로나 사태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지원금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 사업 운영상의 자금 유동성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 이미 2019년 12월 말 이전에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는 이 지원금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원금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긴급 지원금의 성격상 그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신청자가 어떠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증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¹³⁾ 다만 경제적 어려움의 증명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

12) 임대료, 사회보험료 등 개인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인 곤궁은 실업급여II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신청 대상자의 재산 상황 등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13) Bundesregierung(연방 정부)(2020.3.30), Soforthilfen stehen berei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corona-soforthilfen-1737444> (최종 검색일: 2020.5.10)

지원금 지급 주체 및 관련 업무 담당 주체

긴급 지원금은 연방 정부가 운영 및 지급 주체가 된다. 즉 5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은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의 실행 등과 같은 실무는 각 주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원금 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기관은 각 주마다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¹⁴⁾ 이처럼 신청 및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한 실무를 주 정부 차원에서 담당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행정 협약(Verwaltungsvereinbarung)이 지난 3월 30일에 체결된 바 있다.

이처럼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실무는 각 주에 설치된 담당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서류의 심사 및 그에 기초한 결정의 책임은 연방 정부에서 부담하게 된다.¹⁵⁾

기타 지원금과의 중복 가능성 및 상환 여부

긴급 지원금의 지급 주체는 연방 정부로서, 각 주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기타 급여 또는 지원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다.¹⁶⁾ 또한 이 지원금은 추후 별도의 상환의무가 없는 일회성 보조금(Zuschuss)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세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이번 지원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2020년 세금의 조기 납부 대상에서는 이 지원금을 제외

14) 긴급 지원금의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각 주의 실무 담당 기관은, <https://www.bmwi.de/Redaktion/DE/Artikel/Wirtschaft/laender-soforthilfen.html> 참조.

15) BMWi(연방경제에너지부)(2020.4.20), “Coronavirus: Antworten auf häufig gestellte Fragen”, <https://www.bmwi.de/Redaktion/DE/FAQ/Coronavirus/faq-coronavirus.html> (최종 검색일: 2020.5.10)

16) BMWi(연방경제에너지부)(2020.4.20), “Coronavirus: Antworten auf häufig gestellte Fragen”, <https://www.bmwi.de/Redaktion/DE/FAQ/Coronavirus/faq-coronavirus.html> (최종 검색일: 2020.5.10)

하도록 하였다.¹⁷⁾ 다만 2020년에 영업이익이 존재하는 사업체에 한하여 2021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신청기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긴급 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우선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바 있으며, 아직은 연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

독일재건은행(KfW)-특별 프로그램 2020(KfW-Sonderprogramm 2020)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기업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법상의 정책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이하 KfW)을 통해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독일재건은행(KfW)의 경우 정부 소유의 개발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는 않으며, 이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일반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별 대출 프로그램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대출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은행이 부담하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독일재건은행(KfW)의 인수범위를 조정하고, 관련 절차와 승인 요건 등을 기존보다 단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관련 절차 등의 개선은 지난 2020년 3월 19일에 발효된 유럽

17) Bundesregierung(연방 정부)(2020.3.30), Soforthilfen stehen bereit,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corona-soforthilfen-1737444> (최종 검색일: 2020.5.10)

의회를 위한 임시 조치법(das Temporary Framework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m Beihilferecht)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¹⁸⁾

지원 대상

이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인 이상 크게 제한이 없다. 즉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면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기업(공기업은 제외), 비영리 단체가 아닌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 주택건설회사, 임대 회사 등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임대사업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투자금이 자본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에도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국외 공적 자금을 투자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규모에 따라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경우에 한하여 사안별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기업, 농업 분야 1차 생산기업, 비영리 목적의 회사 및 협회, 은행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를 비롯하여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임대인은 이 특별 프로그램의 대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 프로그램 2020의 주요 내용

피고용인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4,3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독일재건은행(KfW)이 최대 90%의 신용리스크를 인수함으로써 대출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한다.

대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달리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독일재건은행(KfW)이 최대 80%까지 신용리스크를 인수하게 된다. 이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독일재건은행(KfW)의 신용리스크 인수 대상이 연 매출 5억 유로 이하

18) BMWi(연방경제에너지부), “Maßnahmenpaket für Unternehmen gegen die Folgen des Coronavirus”, 2020.4.28, S. 2

대기업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한도는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300만 유로까지, 간소화된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유로까지로 설정되었다.

그 밖에도 이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한도가 10억 유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출 이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1~1.46%, 대기업의 경우 2~2.12%로 인하되었다. 대출 기간도 기존에 5년이었던 것을 6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대출 금액이 8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하였다.

독일재건은행(KfW)-긴급 대출 2020(KfW-Schnellkredit 2020)

국책 금융기관인 독일재건은행(KfW)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250인 이하 기업)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 2020을 통한 대출과는 별개로 긴급 대출 프로그램(KfW-Schnellkredit 2020)도 마련하였다.¹⁹⁾

이 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2019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대출금까지는 독일재건은행(KfW)이 신용리스크를 100% 인수하여, 대출 주거래 은행이 부담할 신용리스크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은 독일재건은행(KfW)의 신용리스크 인수로 내부 신용위험평가 및 별도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 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 ①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50만 유로까지
- ②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만 유로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긴급 대출은 특별 대출 프로그램과는 달리 기존 심사에 활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신

19) 대출금의 성격상 회생대출기관(KfW)의 다른 대출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마련된 경제안정화기금과의 중복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회성 보조금 형식의 정부 지원금은 추가로 수급할 수 있다.

청 기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주거래 은행은 단지 대출 신청 기업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신청 기업의 매출, 수익률, 고용 규모 등을 평가하게 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률적으로 3%로 결정되었으며, 조기 상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출금은 10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며, 거치 기간은 최대 2년이다.

■ 기타 지원 정책

정부 보증(Bürgschaften)의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증 은행(Bürgschaftsbank)의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보증으로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 규모는 기존에 125만 유로에서 250만 유로로 두 배 증액되었다. 이 보증 확대 혜택은 산업 분야의 제한 없이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스타트업 기업 자금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금 및 대출 관련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생 기업(Start-ups)의 경우에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신생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당 최대 80만 유로까지 지원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 긴급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크게 보조금 형식의 긴급 지원금과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긴급 지원금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같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금전적 지원인 것이다. 인건비와 같은 고용상의 위기를 위해서는 단축근로지원금(Kurzarbeitergeld)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지원금 또는 경제적 혜택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동일한 경우라도 운영 주체의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연방 정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과 주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제도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원을 위해 유럽 의회가 마련한 임시 조치법에 기초하여, 해당 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수준까지 그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추가적인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 불명확한 가운데 독일이 지난 3월 말에 마련한 현재의 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I**